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5629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김정남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95,172,591원 및 그 중 490,967,046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1. 9. 7.까지 연 8%의, 그 다음날까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 B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35,716,372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처음 표기한 다음부터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은 원고에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을 부탁하기 위해 2018. 9. 21., 2019. 11. 18. 원고와 보증약정(이하 위 각 보증약정을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 A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기초로 2018. 9. 28. 3억 원, 2019. 11. 19. 2억 원을 각 대출(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8%이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23.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9,045,5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1. 1. 29.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은 2021. 3. 19. 원고에게 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6. 2. D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원리금 합계 491,050,596원을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83,550원을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의 진행 등

-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 2) 원고는 2022.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배당받은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4775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942,75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22. 4. 13.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34,837,72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1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자(채당금)	15,495,480	15,495,480
2	안산시 단원구	교부권자(당해세)	2,815,890	2,815,890
3	E유한회사(중소기업 은행의 양수인)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831,061,808	831,061,808
4	안산세무서	교부권자	45,453,270	45,453,270
4	안산시 단원구	교부권자	73,930	73,93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교부권자	4,220,970	4,220,970
6	피고 B	근저당권자	149,045,500	35,716,372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490,967,046원,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한 추가보증료 2,030,130원,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회수하고 남은 2,175,415원의 합계 495,172,591원(=490,967,046원 + 2,030,130원 + 2,175,4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90,967,0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이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4.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2021. 6. 2. D에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12. 23.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보증약정은 2018. 9. 21., 2019. 11. 18. 이미 체결되어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12. 2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27.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21. 1. 29.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1. 6. 2.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A의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1) 갑 제11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023,714,000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적극재산	가액(단위: 원)
1	이 사건 부동산 (2021. 4. 15.기준, 갑11)	900,514,000
2	피고 A 보유 중고기계 [을8]	58,300,000
3	피고 A 보유 기계 MYNX-5400/40(12K) [을9]	64,900,000
합계		1,023,714,000

(2) ① 이에 대해 피고 B은 피고 A이 소유하던 233,617,255원 상당의 기계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 B은 피고 A이 보유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860만 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20. 4.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극재산

갑 제12, 13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924,124,153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소극재산	가액(단위: 원)
1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495,172,591
2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51,905,500
3	국세(안산세무서) 체납액	45,453,270
4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대한 체납액	4,220,970
5	피고 A 보유 기계 MYNX-5400/40에 관한 F에 대한 리스채무 (을11, 근저당권설정계약일과 가까운 2020. 12. 15. 기준)	54,320,014
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31,051,808
7	D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0
8	G에 대한 대출금채무	72,000,000
9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대출금채무	485,000,000
10	H에 대한 대출금채무	29,000,000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0
12	F에 대한 대출금채무	56,000,000
	합계	2,924,124,153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A이 자신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채권자들이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다)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무자력인 상태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 A의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 B은 피고 A에 물품을 공급해오던 관계였는데 2020. 1.경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B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 이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9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안산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 B은 피고 A이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 B은 2020. 10. 15. I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피고 A이 피고 B에게 151,905,500원의 채무가 있다는 ‘채무확인서’를 피고 A으로부터 작성·교부받고, 피고 A이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D,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12. 3.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었다.

(3)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익자는 그 행위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2)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구하경, 판사 정의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M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

일반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3층공장

1층 2026.00㎡

2층 149.29㎡

3층 149.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O호

일반철골구조 24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공장용지 9370.9㎡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1. 9370.9분의 386.7781. 끝.

